

# 부산광역시 사하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안 번호	10
----------	----

제출일자 : 2006. 8. 31

제 출 자 : 사하구청장

## 1. 제안사유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법률 제7848호, 2006. 1. 11. 공포, 2006. 7. 12. 시행) 및 같은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9608호, 2006. 7. 11. 공포, 2006. 7. 12. 시행)이 제정됨에 따라 원인자·수익자 부담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하여 건축행위로 유발되는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일부를 건축행위자에게 부담하게 하는 기반시설부담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2. 주요골자

### 가. 기반시설특별회계의 설치 규정(안 제1조)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등에 소요되는 재원인 기반시설부담금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특별회계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나. 세입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2조)

기반시설부담금의 구 귀속분 및 국가의 보조금 등 세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다. 세출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3조)

기반시설설치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기존 기반시설의 대체 및 개량, 기반시설부담금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 등 특별회계의 세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 예산 및 기반시설 관련 담당부서 합의

라. 입법예고 : 2006. 8. 10 ~ 8. 30(20일간) ▷ 제출된 의견없음

마. 기 타 : 조례표준안 시달(시 시설계획과 4324, 2006.7.12)

## 부산광역시 사하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광역시 사하구 기반시설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세입)** 부산광역시 사하구 기반시설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 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부담금의 구 귀속분
2. 영 제4조제1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대한 보조금
3.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4. 그 밖에 특별회계의 운용에 따른 수입금

**제3조 (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2. 기존 기반시설의 대체 및 개량
3. 미집행 기반시설 부지의 매입
4. 기타 기반시설부담금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

**제4조(회계관계공무원의 지정)** 특별회계를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회계관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징수관 : 도시국장
2. 분임징수관 : 도시개발추진단장
3. 경리관 : 총무국장
4. 분임경리관 : 재무과장
5. 지출원 : 경리업무담당주사
6. 수입금출납원 : 기반시설부담금 업무담당주사

**제5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특별회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